

제 호

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

1. 기관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주소:

「환자안전법」 제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 직인

